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8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정춘생·김준형·신장식

이해민 · 황운하 · 박은정

강경숙 • 백선희 • 차규근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 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 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1항 각호 신설 및 제5항 후단).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제3항에 따른 2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다.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 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 제3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징 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 등록 등) ① -----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 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다음 각 호의 요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 건을 모두 갖추어-----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 <u>화자동응</u>답조사시스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 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 을 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 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 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 근 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어야 한다.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

<신 설>

<u><신</u>설>

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 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수행한 사람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 •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 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 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 행한 사람

-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

- ② ~ ④ (생 략)
-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1. ~ 3. (생략)
- ⑥ (생략)

용할 수 있는 사무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3</u>
<u>년</u>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